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919호
2. 발 의 자 : 홍성룡 의원 외 11명
3. 발의일자 : 2020. 10. 15.
4. 회부일자 : 2020. 10. 26.

II . 제안이유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
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3.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3. 기 타 : 해당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10월 15일 홍성룡 의원 등 12명의 의원에게 의해 의안번호 제1919호로 공동 발의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약칭: 반민족규명법)」은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을 선정·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 특별법으로,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이며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¹⁾
-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일잔재 청산

1)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 “친일청산이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출발”」 (한국경제, 2019.2.26.)

과 관련하여 ‘별로 청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9.3%, ‘전혀 청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0.8%로,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정치인·고위공무원·재벌 등에 친일과 후손들이 많아서(48.3%)’, ‘친일과 명부재산 환수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27.8%)’ 등을 꼽았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상반된 조사 결과’, ‘친일과 후손의 재산 논란’, ‘친일기업 오명 논란’ 등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²⁾

○ 이에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실태조사, 사업 추진,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구성체계

○ 동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2) ‘6·25 영웅’ vs ‘친일’ 고 백선엽 장군은 누구 (한국일보, 2020.7.11.)

친일파 후손이 매입한 남이섬 ‘친일재산’은 아닌 이유 (서울신문, 2019.7.6.)

삼양그룹, 전범 미쓰비시와 끈끈한 관계... 걸히지 않은 ‘친일 그림자’(투데이신문, 2019.1.3.)

규정하였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동 조례안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는 교육 현장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도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6017, 2020.11.10.).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약칭: 반민족규명)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 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국회의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5조(보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료의 편찬) 위원회는 제8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